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 제출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(안 제4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